

#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(7만 엔) 안내

-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(1세대당 7만 엔)은 국가의 '중점 지원 지방 교부금'을 활용해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 세대에 지급하는 급부금입니다.
- 본 급부금을 수급하려면 **절차가 필요한 경우**가 있습니다.

## 대상 세대

2023년 12월 1일(기준일) 시점에 스기나미구에 주민등록이 있고 세대원 전원이 2023년도분의 **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인 세대**

## 급부금 지급액

1세대당 **7만 엔**

## 지급 대상·절차 유무

###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

**A** 대상 세대 중 **스기나미구에서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(1세대당 3만 엔)을 지급받았으며** 세대원 이동 등이 없는 세대

**B** 대상 세대 중 **A**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 
(2023년도 주민세 과세자에게 부양 등을 받은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는 제외)

###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

2024년 1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세대주 앞으로 **'지급 안내'**를 발송합니다.  
전회 실시한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(1세대당 3만 엔)을 지급한 계좌로 입금합니다.

2024년 2월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.

### 절차가 필요합니다

2024년 1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세대주 앞으로 **'확인서' 또는 '신청서'**를 동봉한 안내를 발송합니다.

뒷면을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십시오.

서류 제출 후 1개월 정도 후에 지급합니다.

## 절차 안내(앞면 B)의 대상 세대에 한함

### ▶ 세대원 중에 2023년 1월 2일 이후에 전입한 분이 없을 경우

- 2023년 12월 1일(기준일) 시점에 스기나미구에 거주하는 해당 세대에는 '확인서'를 동봉한 안내 서류를 2024년 1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.
- 확인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동봉된 안내에 기재된 필요 서류(입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의 사본)를 첨부하여 **반송해 주십시오.**

### ▶ 세대원 중에 2023년 1월 2일 이후에 전입한 분이 있을 경우

- 2023년 12월 1일(기준일) 시점에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에는 '신청서'를 동봉한 안내 서류를 2024년 1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.
-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동봉된 안내에 있는 필요 서류(전입한 분이 2023년 1월 1일 시점에 거주한 시·구·정·촌이 발행하는 2023년도 주민세 비과세 증명서 등)를 첨부하여 **반송해 주십시오.**
- 동일 세대에 2023년도 주민세가 과세된 분이 있을 경우 본 급부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### ▶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

확인서, 신청서 모두 전자(스마트폰, PC 등) 신청이 가능합니다. 동봉된 안내에 따라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### ▶ 확인서, 신청서 제출 기한

우편 송부의 경우 2024년 5월 31일(금)(소인 유효)

전자 신청의 경우 2024년 5월 31일(금) 오후 11시 59분



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의 **'전기통신금융사기'** 및 **'개인정보 탈취'**에 주의하세요!

자택이나 직장 등으로 스기나미 구청(의 직원) 등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전화나 우편물이 온 경우에는 스기나미 구청 보건복지부 관리과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 담당(전화: 03-3312-2111(대표)), 경찰서 또는 스기나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제로 다이얼(전화: 03-5307-0800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문의

스기나미구 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 콜센터

☎ 0120-378-233

접수 시간 8:30~17:15(토·일·공휴일 제외)